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704 호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년 월 일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 
지원 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서동학 의원 등 7인 |
| 발의연월일 | 2021년 4월 일  |

#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(서동학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704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1년 4월 일  
발 의 자 : 서동학, 김기창, 박우양,  
연철흠, 전원표, 황규철,  
송미애

## 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안전취약계층 안전 확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안전 환경 지원 대상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안전 환경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
- 바. 기초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- 사. 안전 환경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

라. 조례안 예고 : 2021. 4. 2. ~ 2021. 4. 8.(의회 홈페이지)

##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2. “안전취약계층”이란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별, 연령, 지역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시장·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안전 환경 지원 대상) 도지사는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13세 미만 어린이
2. 65세 이상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4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, 소년·소녀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6.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5조(안전 환경 지원 범위)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방·가스·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
2.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4.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업무의 위임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·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가 시장·군수 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·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홍보) 도지사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1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, 범위,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.

#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제39조의2(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13세 미만의 어린이
2. 65세 이상의 노인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4.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·가스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

2.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

3.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

4.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.

## □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충청북도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지원

### 2. 비용발생 요인

- 재난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및 용품 제공
  - 소방본부 「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」은 취약계층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유지보수
-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(강사비용)
  - 안전정책과 「찾아가는 안전문화교육 사업」은 취약계층 교육 지원으로 강사비용 발생

### 3. 관련조문: 안전 환경 지원 사업(안 제5조)

### 4. 비용추계 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(연도별 물가상승률 등은 배제함)
- 나. 추계 결과 : 5년간 495,000천원 소요
- 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| 계       | 1차년도<br>(2021년) | 2차년도<br>(2022년) | 3차년도<br>(2023년) | 4차년도<br>(2024년) | 5차년도<br>(2025년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세 출                     | 495,000 | 99,000          | 99,000          | 99,000          | 99,000          | 99,000          |
| 재난대비<br>안전장비 제공         | 435,000 | 87,000          | 87,000          | 87,000          | 87,000          | 87,000          |
| 찾아가는<br>안전문화교육사업<br>강사료 | 60,000  | 12,000          | 12,000          | 12,000          | 12,000          | 12,000          |